#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839

발의연월일: 2021. 10. 13.

발 의 자:김민석·강득구·강민정

양정숙 • 윤준병 • 이용빈

이은주 · 최혜영 · 허종식

홍정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로 간주되는 행위를 지정하고 있어 동물학대 범위가 협소한 문제가 있고,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 등의 규정이 없어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이 미흡하며,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동물을 계속해서 소유하는 데 제한이 없는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록대상동물 목록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소양 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동물의 도살방법 관련 규정도 모호함.

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사항을 명시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동물학대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등 제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병과, 등록대상동물 등록 갱신 및 교육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도살방법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 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3및 제46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는 등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을 도살하거나 살처분하는 경우
-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3.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 4.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에 의한 경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을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 3.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에 의한 경우
- 4.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
- 5.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 6. 제23조에 따른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 7.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인 경우
- 8.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렁으로 정하는 경기를 하는 경우 제8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 다만, 축산물의 가공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살되어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등록하여야 한다"를 "등록하여야 하며, 3년 이

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변경신고"를 "갱신 절차,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 및 적정한 사육·관리 등에 관하여 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경우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8조제2항"으로, "동물을 학대한"을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제1호의5 및 제1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1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4. 제8조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6조의3(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 소유 제한) ① 법원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동물학대행위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사육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의 상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받은 자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제46조의4(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1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

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다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1.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 · 상담
- 2.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 3.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

제47조제2항제5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4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제47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 지 아니한 소유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대상동물 등록 소유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 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 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단서 신설>

-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 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 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 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 르게 하는 행위
-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

개 아 정

-----하는 등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② ~ ④ (현행과 같음)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다 른 법률에 따라 동물을 도살 하거나 살처분하는 경우
-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u>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동물을</u>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 3. 사람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

-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 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 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 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 게 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 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 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 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 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 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 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이 없는 경우
- ·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 4.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에 의 한 경우
- ② -----신 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 | 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 히는 행위를-------.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1.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 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 법이 없는 경우
    - 3.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에 의 한 경우
  - 4.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 한 경우
    - 5.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해 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경 우
-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 6. 제23조에 따른 동물실험을

- 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여 필요한 방식인 경우
-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 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 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 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 위
- ③ ④ (생 략)
-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 |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4. (생략) <신 설>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모든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

-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u>7.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u>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경기를 하는 경우

- ③·④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5.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 위. 다만, 축산물의 가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 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 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 ④ (생 략)

<u>고통</u>	을 최소	화할 수	있
는 방법으로	도살되어	거야 한T	<u>}</u> .

② (현행과 같음)<삭 제>

1112소(궁득대상궁물의 궁득 궁)
①
<u>등</u> 록하
여야 하며, 3년 이내의 범위에
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
야 한다
<u>.</u>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 저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46조(벌칙) <신 설>

(2)	
<u>갱신 절차, 변</u>	<u>경</u>
신고	
⑥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	물
을 등록한 소유자는 동물의	보
호 및 적정한 사육・관리 등	에
관하여 등록일 이후 6개월	<u>0]</u>
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	<u>o}</u>
한다.	
세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6조의3제1항에 따	라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의	<u>반</u>
려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	실
을 선고하는 경우	
4. (현행과 같음)	
세46조(벌칙) <u>① 제8조제1항을</u>	위
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	게_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 2.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u>제8조제2항 또는 제3항</u>을 위 반하여 <u>동물을 학대한</u> 자

<신 설>

<u>1의2.</u> (생 략) <u><신</u> 설>

<u>1의3.</u> · <u>1의4.</u> (생 략)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6개
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u>한다.</u>
<u>②</u>
<u>&lt;삭 제&gt;</u>
2. (현행과 같음)
<u>③</u>
1. <u>제8조제2항동물</u>
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1의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u>1의3.</u> (현행 제1호의2와 같음)
<u>1의4. 제8조제5항제5호를 위반</u>
하여 동물의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u>1의5.</u> · <u>1의6.</u> (현행 제1호의3

2. • 3. (생략)

③ • ④ (생 략)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 ⑥ -----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다.

<신 설>

<신 설>

및 제1호의4와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5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항까지-----

제46조의3(동물학대행위자의 동 물 소유 제한) ① 법원은 동물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 을 선고하면서 시·도지사, 시 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동물학대행위자의 반려 동물에 대한 소유권, 사육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이 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의 상 실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받은 자 는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 내에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46조의4(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동물학대행위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

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1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동물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다른 수강명령 또 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 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 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 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 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 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 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 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 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 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동물학대 행동의 진단 · 상담 2. 소유자등으로서의 기본 소양 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동물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 령에 관<u>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u>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제47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 략)
-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 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u>아니</u> 한 소유자

5의2. ~ 15. (생 략) <신 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2. (생략)

<신 설>

3. • 4. (생략)

④ (생 략)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u>아니하</u>
거나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한
5의2. ~ 15. (현행과 같음)
16. 제4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u>자</u>
③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교
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3.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